

#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9-849 |
|----------|-------|

제출년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설호영, 이진분, 송바우나,  
이지화, 유재수, 한명훈,  
선현우, 박은경, 최찬규,  
박은정, 한갑수, 김유숙,  
황은화 의원(16인)

### 1. 제안이유

-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형평성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입학준비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 【붙임 1】 제정조례안

###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안산을 실현하고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자녀의 입학준비를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외국인의 경우 안산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입학준비금에 준하는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

다.

② 입학준비금은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 속         |       | 안산시의회                       |
|-------------|-------|-----------------------------|
| 입<br>안<br>자 | 시 의 원 | 현옥순 의원<br>대표발의<br>(행정 3573) |



#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9-849 |
|----------|-------|

제안년월일 : 2025. 9. 1.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시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입학준비금 지원의 신중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학준비금 지급 대상자를 '초·중·고등학생' 에서 '초등학생'으로 변경

##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을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으로 한다.

제1조 중 “초·중·고등학교” 를 “초등학교”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고등학교” 를 “초등학교”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초·중·고등학교” 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를 “ “초등학교” 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초·중·고등학교” 를 각각 “초등학교” 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안산을 실현하고자 <u>초·중·고등학교</u>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입학준비금”이란 <u>초·중·고등학교</u>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자녀의 입학준비를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u>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u></p> <p>제1조(목적) -----<br/>-----<br/>-----<br/>-----<u>초등학교</u><br/>-----<br/>-----<br/>-----.</p> <p>제2조(정의) -----<br/>-----.</p> <p>1. ----- <u>초등학교</u><br/>-----<br/>-----<br/>-----<br/>-----.</p> |

2.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4. (생략)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 (생략)

3. 외국인의 경우 안산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② (생략)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3.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① -----  
-----  
-----  
초등학교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초등학교  
-----  
-----

② (현행과 같음)